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세무담당부서(장)
제목 2025년 주요 법령 개정·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0617호, 제20632호(2024.12.31.) 및 대통령령 제35165호, 제35166호, 제35177호(2024.12.31.)로 일부 개정·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www.scra.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개정·시행법률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www.moleg.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법령 개정내용

법 령	주요 내용
① 조세특례제한법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HEV) <u>개별소비세액 감면기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u>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 <u>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하이브리드 제외)</u>
③ 도시철도법 시행령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HEV)의 <u>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기간 2년 연장</u>
④ 지방세법 시행령	- 자동차세에 대하여 <u>연세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의 공제율 3% → 5% 조정</u>
	-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u>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u>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u>앞으로 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u>

2025년 주요법령 개정 안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HEV) 개별소비세액 감면기간 2년 연장 및 하이브리드 감면한도 감액

<신·구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u>10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u>100만원</u>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100만원</u>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u>70만원</u> ----- ----- 2. ----- <u>70만원</u> ----- ----- <u>70만원</u>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③ ----- <u>2026년 12월 31일</u>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⑥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⑨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및 하이브리드 감면 제외

<신·구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④ ----- -----전기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신 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 (제43조)
-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
-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
- 2025년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세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의 공제율 3% → 5% 조정 (제125조)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신 (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 라 ----- ----- ----- -----.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 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 제6호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 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u>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 1항제6호마목</u> 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등기로	<삭 제>

서 같은 사항을 본점과 지점 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 건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②·③·④·⑤ (생 략)	①·②·③·④·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금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HEV) 개별소비세액 감면기간 2년 연장 및 하이브리드 감면한도 감액
(*[별표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 비고	※ 비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차. ----- ----- ----- ----- ----- <u>(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 ----- ----- -----.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해야 하	카. ----- ----- ----- ----- ----- <u>(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 ----- ----- 140만원(매입해야 하

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140만원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 2호 카목 중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금액 한도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친환경차 혜택)

□ 유료도로법 시행령

- 친환경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 그 감면율을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점진적으로 감소함
- * 공포한 날부터 시행